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의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40796]
정보공개서 최초등록 [20140829]
정보공개서 최종등록 [20240426]

홈페이지 www.weenybeeny.co.kr

대표이메일 cmix@cmix.co.kr

[위니비니]

정 보 공 개 서

위니비니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26.

위니비니코리아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82
(도곡동, 9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587-504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587-506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영업부 02-587-504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위니비니 코리아 주식회사	위니비니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82 (도곡동,9층)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05.20	2014.06.01	이왕행	02)587-5040	02)587-5064
	법인등록번호	110111-5419852	사업자등록번호	220-88-8005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임원)	이왕행	위니비니	서울 강남구 도곡로 182 (도곡동,9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왕행	02-587-5040	02-587-5064
사용인(감사)	박혜영	위니비니	서울 강남구 도곡로 182 (도곡동, 9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왕행	02-587-5040	02)587-5064
계열회사	(주)씨믹스	위니비니	서울 강남구 도곡로 182 (도곡동, 9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왕행	02-587-5040	02)587-506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위니비니”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위니비니	
상호	위니비니 OO점	

상표(서비스 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41-0130341호
광고		
그밖의 영업 표지		

위니비니는 미국 및 유럽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캔디전문점으로 초콜릿, 캔디, 젤리빈, 구미, 카라멜, 머쉬멜로우 등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따라 원하는 양 만큼 떨어져 구매하는 “PICK & MIX” 형태의 매장입니다.

위니비니는 전세계 제과류 중 한국인의 입맛에 맞고 건강한 제품만을 엄선하여 국내 최초로 전문점을 오픈하였으며, 유럽 및 미국의 최대 업체들과의 독점적 공급계약 아래 250여가지 이상의 국내 최대종수와 최고급 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부가세 제외)

1)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655,711,984	32,123,323	623,588,661	263,859,795	64,208,355	68,554,005
2022	734,197,990	22,078,307	712,119,683	326,929,217	76,903,558	88,531,022
2023	761,111,762	23,481,748	737,630,014	198,622,782	27,832,785	25,510,33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1) 내용의 매출액과 같음”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왕행	대표이사	2014.06.01~현재	위니비니코리아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박혜영	감사	2014.06.01~현재	위니비니코리아주식회사 감사	회계, 자금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계열 회사	(주)씨믹스/ 이왕행	가맹사업 경영	2002.04.01~현재	위니비니(등록번호 제41-0130341호)라는 영업표지의 수입식품 판매사업 경영

(주)씨믹스는 더 이상 신규가맹모집을 하지않아,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상표 소유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②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 번호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 용기간③)
위니비니 (상표권)		2012.08.27 출원 2013.08.14 등록	출원 제 40- 2012-0053715 등록 제40- 0988530	(주)씨믹스	2033.08.14. (2013.08.14~ 2033.08.14)
weenybeeny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05.01.10 출원 2006.04.06 등록	출원 제40- 2005-0000983 등록 제40- 0657796-0000	(주)씨믹스	2026.04.06. (2016.04.06~ 2026.04.06)

귀하가 허용된 범위(매장의 입간판 및 매장인테리어)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 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위니비니] 가맹사업 현황

1. 위니비니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4.06.01
(가맹점을 시작한 날 : 2014.12.05)

2. 위니비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니비니코리아주식회사	위니비니	이왕행	2014.06.01. ~ 현재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82 (도곡동, 9 층)

3. 위니비니 업종

영업표지	업종	
위니비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도소매	초콜릿, 캔디, 젤리, 카라멜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위니비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직영점	전체	직영점	전체	직영점	전체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4	4		3	3		3	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	2		3	3		3	3	
강원	2	2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위니비니] 가맹점 수

년도	년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년말	증감
2021	5			1		4	-1
2022	4	1		2		3	-1
2023	3	0		0		3	0

6. [위니비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위니비니코리아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계열사 (주)씨믹스는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하지 않아 정보공개서(영업표지: 위니비니)를 2014년에 자진 취소하였음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①	가맹점/직영점의 수 ^②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계열회사	(주)씨믹스	위니비니	20080100102	식품수입 및 판매	0/54	0/49	0/49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3 년말 가맹점 수	2023 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매출액	면적 3.3 m ² 당	상한	면적 3.3 m ² 당	하한	면적 3.3 m ² 당	
전체	3	129,241	16,028	156,150	27,869	81,839	9,387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세종								
경기	3							5 곳미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3년 말 가맹점 숫자는 3개 입니다.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당사에서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제품들의 판매 비중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위니비니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3	2,13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없음

10. 광고,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 위니비니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총 액은 ₩0 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원,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광고	소계				-	
	TV				-	
	라디오				-	
	인터넷,전화				-	
판촉	소계		-	-	-	
	입장권				-	
	상품권				-	
	부채,달력				-	
	판매장려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신한은행	방배기업금융지점	방배동898-5	02-581-224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위니비니코리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3. 형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위니비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약 72,7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실평수 33m² 매장 기준, 부가세포함).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초도 상품대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자율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그 외 비품 등	개인구매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후 익일 이내	영업개시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개설비	2,200	계약 체결 후 익일 이내	영업개시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수도권기준임 1)지방은 330 만원 2)제주도는 550 만원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③	비고
총계	[5,000]			
(현금)보증금	5,000	계약 체결 후 익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영업개시이전 계약해지시 반환

기타 : 교육비 및 본사영업활동비는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2,700
가입비	5,500
개설비	2,200
개점행사비	0
(현금)보증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④
총계		60,000	6,00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33,000	3,300	인테리어 업체와 별도협의	인테리어 업체와 별도협의	3.3 m ² 기준,금액은 상황에따라 변동가능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위니비니 협력업체	20,000	2,000	영업시작일 5 일전까지	상품 미공급시	3.3 m ² 기준,금액은 상황에따라 변동가능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위니비니 협력업체	7,000	700	가맹점 사업자가 별도 구매	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POS,어닝,에어컨,C CTV, 청소도구등 기타 소모품 구매 비용

위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희망 매장 선정 여부	선정 기준
가맹사업자	가맹점 희망자가 희망 매장을 선정하였을 경우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 망자의 희망 매장 확인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가맹점 개설 여부 결 정 → 가맹점 개설 가능하다고 당사 판 단 시 개설
당사 점포개 발팀(02- 587-5040)	가맹점 희망자가 희망 매장을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 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점 개설

6) 가맹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 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위니비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8) 가맹금은 한번에 일시불로 납부하며, 나누어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④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해당없음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전체수수료의 100%				
교육훈련비		해당없음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⑤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협력업체					교체. 보수 필요시시설, 기기등의 내구연수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5 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자연이자 ^⑥		해당없음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없음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회계처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고 현황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

서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및 양수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위니비니]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의 부담금은 없으며, 양수인은 당사에 보증금 오백만원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 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당사는 판매 특성상, 반품은 출고단위의 개봉되지 않은 제품만 반품가능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위니비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 및 제품, 인테리어, 각종 비품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상품 및 제품, 인테리어, 각종비품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에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사와 가맹사업자는 약정하기로

합니다.

사유 : 위니비니라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당사가 영업지역 내의 영업권을 독자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만큼 가맹사업자도 위니비니 가맹 본사의 제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매장 컨셉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상품의 판매 및 인테리어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승인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으며, 만약 추가로 취급하고자 하는 품목이 발생 시 가맹사업자는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거래상대방은 결정권은 매뉴얼만 준수한다면 사업주자율로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위니비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당사가 “위니비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위니비니”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전국 가맹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및 용역만을 취급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당사수입, 생산, 사업 제품	당사 공급 제품 외 판매금지	1회위반 : 구두경고 2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위반 :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 없이 취급, 판매하는 경우 위와 같이

당사에서는 조치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주석) 당사는 서면시정 요구 시 가맹계약 해지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보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품은 판매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 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할인판매 행사 등은 당사의 승인 하에 가능합니다.

상품·용역명 ^①	권장가격(단위: 원) ^②	가격 통보 방법	비고 ^③
벌크제품	4,300(100g)	가맹계약시 공지	
셋트제품	개별단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영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가맹본부	계열회사
수입 초콜릿, 캔디 젤리 등 수입과자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	위니비니코리아의 위니비니	(주)씨믹스의 위니비니

※ (주)씨믹스는 기존 가맹점은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신규 가맹점 오픈은 위니비니코리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위니비니코리아의 신규 가맹점 오픈시, 기존 (주)씨믹스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내에 개설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①	설정방법 ^②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위니비니’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위니비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주)씨믹스	www.weenybeeny.com	초콜릿, 젤리 등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위니비니”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단,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가맹점계약서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보증금 및 상품대 입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2항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3조3항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3조4항
5. 위니비니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3조5항
6.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3조6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개점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36조1항
2.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36조2항
3. 당사의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당사의 승인 없이 취급, 판매하여 당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6조3항
4.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인정될 때	36조4항
5. “파산선고 등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인정할 근거가 있을 때	36조5항
6 본 계약서상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경우	36조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7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7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7조 4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7조 6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7 조 7 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7조 8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7조 9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7조 10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귀하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양도 가능 조건 ^②	양도 절차 ^③	비고 ^④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문의: 점포개발팀 (02-587-5040)

○ 양수인 거래보증금 오백만원을 당사에 납부	체결(15 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그 밖의 거래조건과 계약내용은 당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범위	절차	기타의무사항
상속	본부승인시가능	모든 권리의 무	가맹점사업자가 당 사에 서면통지 후 당사의 승인 시 가 능	
대리행사	본부승인시가능	가맹점사업자 가 지정한 범 위 내의 권리 의무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 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지역 내에서] 귀하가 위니비니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①	경업허가 절차 ^②	비고 ^③
○ 일반인에게 커피를 판매하면 서 캔디,초콜릿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점포개발팀 (02-587- 504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위니비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매장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②	대체 가능 인력 ^③	비고 ^④
2 명 이상	상관없음	가능한 여유있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광고 및 선전을 전담합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단독 또는 당사 이외의 타인과 공동으로 광고를 할 경우에는 당사와 사전에 합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때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체의 비품(쇼핑백, 포장지 등) 또는 판촉용 사은품 등은 당사가 공급하는 것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타 판매를 촉진시킴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판촉물 등은 상호 협의하여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비품 및 판촉물 등의 사용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는 제작원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는 제작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을”은 “갑”의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의 사용을 중지 및 철거 하여야 한다.

불이행시는 상표권 침해 및 기타의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에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가 제공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내외	17p ~ 19p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 및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10개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실시	- 시장조사 - 유동인구 파악 - 예상매출 및 손익분기점 분석	D-42~40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정보공개서제공14일후)	D-39~38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가맹비 및 보증금 예치	- 가맹비 예치 - 보증금 예치	D-28	
인테리어 점검 계획	- 시설업체 선정 - 도면 회의 - 시설비 결정 - 공사일정 확인	D-28~25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2(22일)	
교육 실시	- 매장운영 교육 실시(직영점 근무)	D-7~5(2일)	
최종 점검	- 인테리어 공사 최종 확인 - 상품 진열	D-2	

	- 쇼윈도우 디스플레이 - 판매사원 교육		
OPEN	- 매장 영업 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이전 14 일 이상 사전 제공 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②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③	지급절차 ^④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공사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수있는 서류첨부) → 3 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없음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영업사항, 정보내용, 판촉활동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 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 일	없음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탄력적 운용	없음	비정기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9 조에 따라, 개점전 2 일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좀 더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해당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점포개발팀(02-587-504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